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6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
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1)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 제3항)

개정안은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일원화된 피해자 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뿐 아니라 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피해 지원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

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 발생 초기에 수색구조상황 및 구조계획 등에 대한 유·가족의 정보제공 수요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구조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기관이 신속히 최대한의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긴급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파견요청 시기 등에 관한 어떠한 제한 없이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지역대책본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관할 지역 소방본부·소방서의 직원 중 일부가 긴급한 구조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지역대책본부로 파견될 경우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원실시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하기보다

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긴급한 구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파견요청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명시 등 안전관리계획 관련 조항 정비(안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내용 등 보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현행법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수립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여 중앙위원회¹⁾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그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적을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 및 여건 변화, 법령·제도의 마련 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통보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사유를 국무총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중요 사항

-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구분	현행법	개정안
목적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내용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법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립 지침	국무총리가 작성·통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통보
수립 절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제출 ②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②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 ③국무총리가 심의를 거쳐 확정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변경 사유	—	·국무총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다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는 제외)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소관 기관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²⁾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바, 재난·안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간소화 등(안 제23조)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는 조정위원회³⁾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며,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⁴⁾에게 집행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여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양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대상 기관에서 지방공기업⁵⁾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세부집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구분	현행법	개정안
수립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작성 → 조정위원회 심의 → 국무총리 승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작성 → 조정위원회 심의(<u>국무총리 승인 삭제</u>)
세부 집행 계획	·작성주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작성주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 지방공기업 등 <u>소관 중앙행정 기관이 없는 기관은 제외</u> (신설)

3)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 분야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안 제23조의 2)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난관리주관기관⁶⁾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

5)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별법에 따라 수립·변경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이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 전반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구분	현행법	개정안
개별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립 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할 의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립 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할 의무 (신설) ·계획 수립 시 계획의 <u>확정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의무</u>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u>수정</u> 요청 가능

4)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고려사항 명시(안 제24조 및 제25조)

현행법은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계획의 수립 목적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시·군·구의 경우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구분	현행법	개정안
목적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고려사항	—	·국가안전관리계획(시·도의 경우) 또는 시·도안전관리계획(시·군·구의 경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통합관제센터가 연계·통합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CCTV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⁷⁾의 CCTV까지 확장하며, ③ 통합관제센터에 재난안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재난관리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목적(범죄예방 등) 외에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통합관제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재난의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제 대상 CCTV 범위의 확대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루는 영상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정보의 활용 범위를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통합관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등(안 제52조, 제 53조 및 제55조)

현행법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⁸⁾하고 있는데, 해양재난의 상황이 종료한 후 긴급구조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육상에서의 재난과는 다르게 긴급구조활동 주체와 긴급구조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해양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의 지정 권한 역시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해양재난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선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추가로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지휘권자와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서 중앙구조본부·광역구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중앙 구조본부 등의 설치)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에 맞는 인용조문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예외 절차 신설(안 제60조 등)

개정안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국비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안번호 2202222호)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두 개정안은 건의 주체 및 심의 배제 사유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5) 부정 수령 복구비 반환 절차에 관한 용어 정비(안 제66조의3)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본질적인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되었고, 2020년 3월 24일 시행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용어를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6)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술료의 징수 기준 일원화(안 제73조조 및 제78조)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성과 기술료 징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취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성과와의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